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발 의 자: 양송이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영등포구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가급적 조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건강권 및 혐연권 보장의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발의자 : 양송이, 신흥식, 이성수
김지연 의원(4인)

1. 제안이유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임.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3. 13. ~ 3. 1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0.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u><신 설></u></p> <p>10.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